

전문건설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Construction
Policy

RICON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담당자: 홍성호 선임연구위원



Contents

RICON

01 들어가면서

0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03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들어가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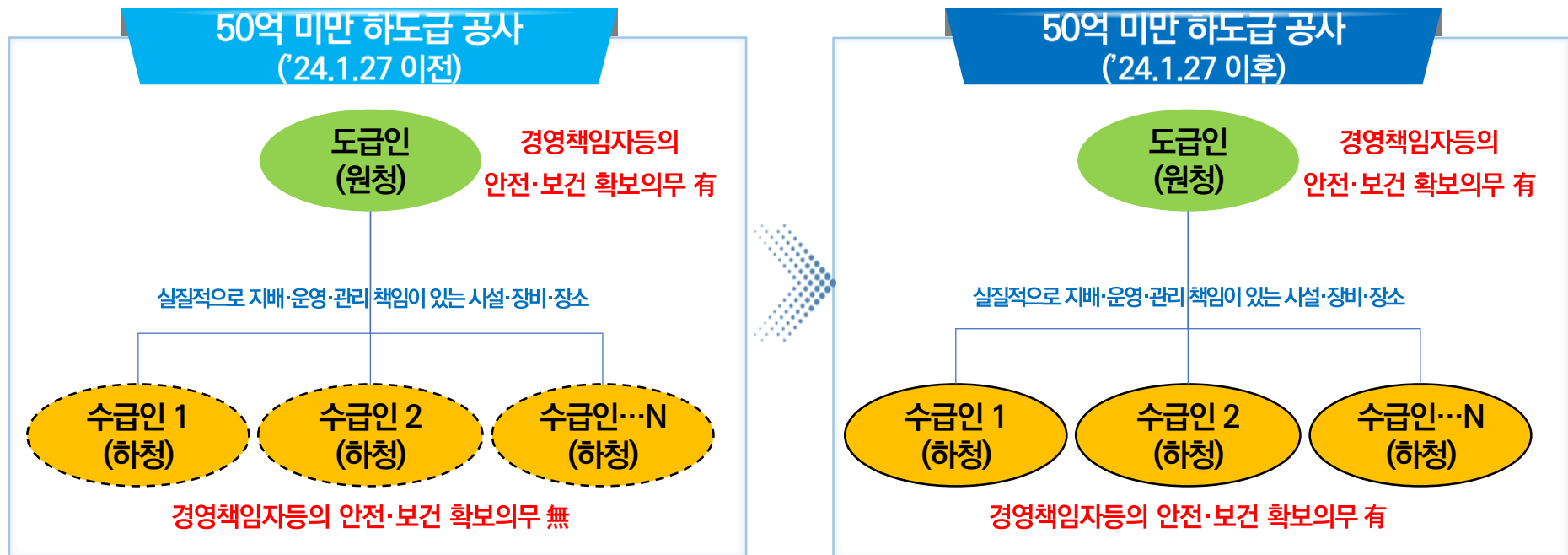
➤ 영세사업장 적용 유예 종료('24. 01. 27) 이후 : 전문건설사 중처법 준수 필요

50억 미만 전문공사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 **無('24.1.27 이전) → 有('24.1.27 이후)**

중처법 유죄 선고된 건설사 8건 사례 중 7건은 하도급 근로자의 중대재해이므로 하수급인도 처벌받아야 하나, 적용 유예 대상에 해당되어 사망사 책임을 원천만 부여

영세사업장
적용 유예

'24.1.26일까지 도급인, 수급인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또는 도급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유예(도급인과 수급인은 상시근로자 수와 도급금액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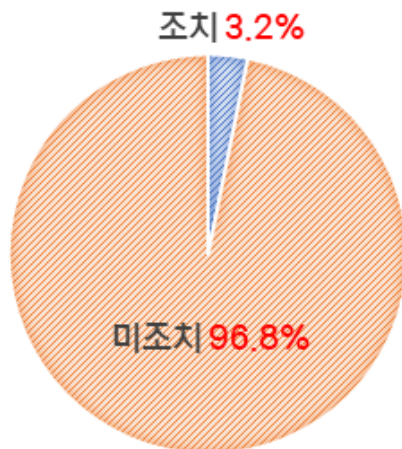
➤ 전문건설사 대응 현황 : 罔知所措(망지소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 상태

방대한 의무와 자본 및 인력의 부족으로 준비를 못한 업체가 전체의 96.8%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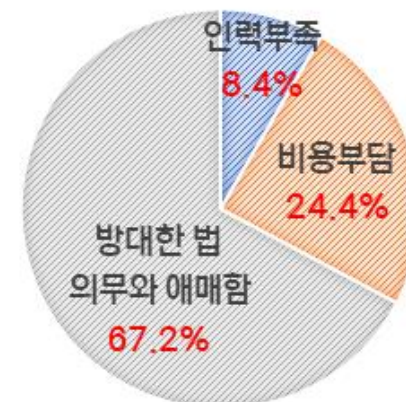


- ❖ 영세하고 인력도 부족하며 돈도 없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법이 요구하는 각종 문서(의무 이행 증빙) 준비부터 시작하여 최소한의 역량이라도 확보
- ❖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정말 해야만 하는 것 몇 개만 알려주세요
⇒ 법에서 정한 의무가 포괄적이라 특정 의무만 준수하는 것을 의미 없음(모든 의무 준수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미흡사유





2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적용대상 및 범위

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거의 모든 건설회사가 해당(상시근로자 산출방법에 대해서는 후술)

법률 내용 비교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사업주, 행위자, 법인
보호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무제공자(위탁, 도급 포함) -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 단위)	쏠 사업장(사업장 단위)
중대재해 정의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처벌	경영책임자등(자연인)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부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 사업주, 행위자 - 사망: 7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인(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위반: 0.5억원 이하 벌금)

현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도 회사 전체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

➤ 건설공사는 탱크 청소작업에서 발생하는 산소결핍증, 고열, 폭염 작업으로 인한 열사병 등 포함

➤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실질 지배·운영·관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부여

→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그 요인의 제거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

법 제4조제1항 제1호

- ①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②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설치
- ③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 ④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 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 **11개 의무 중심으로 설명**
- 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 ⑦ 종사자 의견청취 및 절차 마련
- ⑧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 ⑨ 도급·위탁·용역 시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4호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에 관한 점검
-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조치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여부에 대한 점검
-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실시에 관한 조치

법 제5조

-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시행
- ②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법 제4조 제1항 제3호: 행정기관이 명한 시정조치의 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관리상의 조치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및 처벌 사례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건수사, 기소 및 선고 현황('23.12.31 기준)



- ❖ 510건(중처법 대상 사건건수) → **175건**(검찰 송치, 34.3%) → 33건(기소, 18.9%) → 13건(유죄 선고, 39.4%)
 ↳ 내사종결 50건(위반 없음, 사고위험 예측 및 통제 불가능일 정도로 사고발생 과정 이례적), 수사 중(285건)
- ❖ 유죄 선고 13건의 업종 구분 : **8건(건설업)**, 4건(제조업), 1건(서비스업)/ **8건(도급인)**, **0건(수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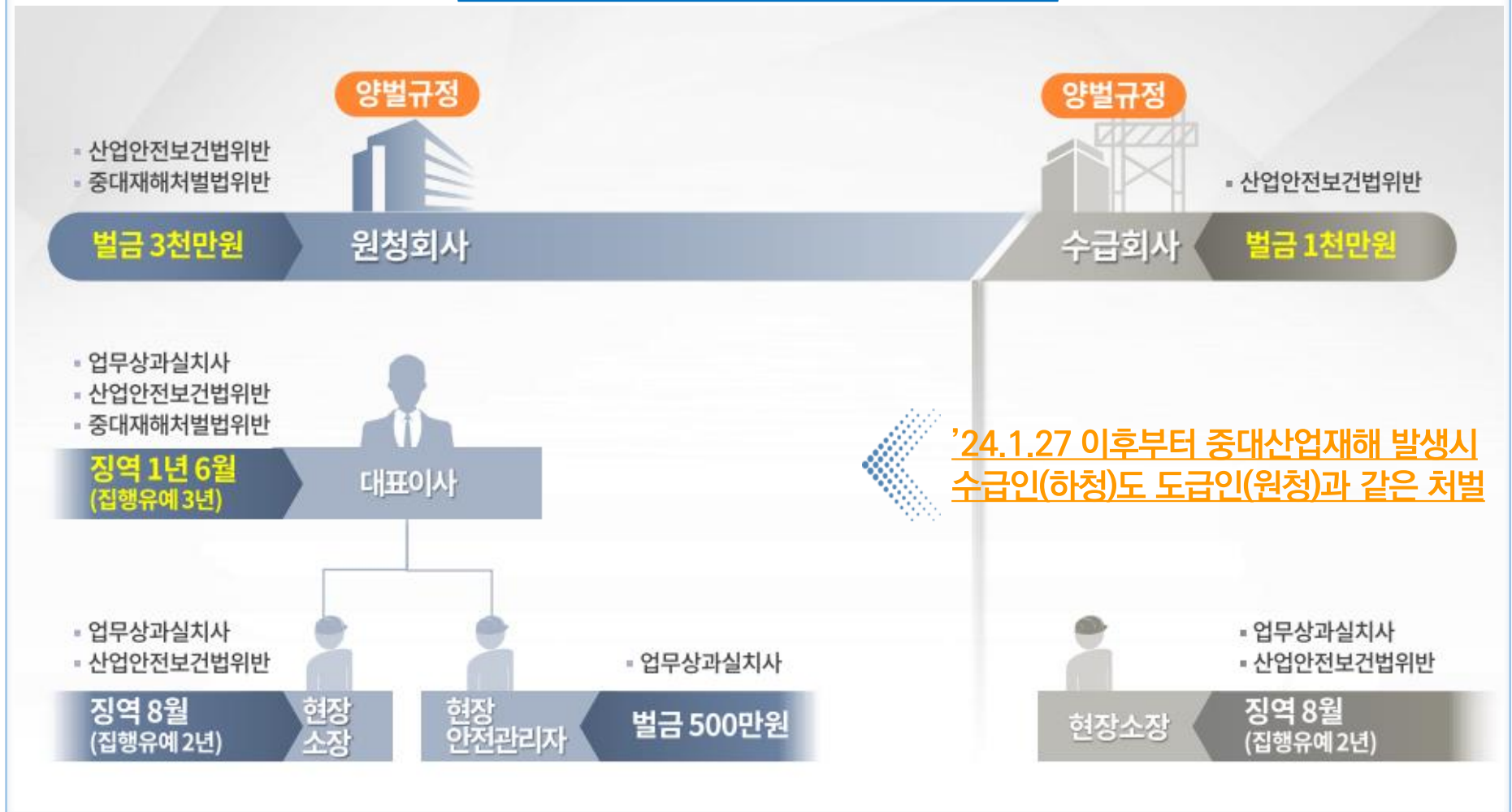
유죄선고 13건 개요

건설업 실형 선고 없음

구분	업체명	선고결과(대표이사)	선고결과(법인)	비고
제1호(건설)	온유파트너스	징역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하청 근로자 추락사 책임 → 원청 대표이사
제2호(제조)	한국제강	징역 1년	벌금 1억원	실형 선고(CEO·CSO 겸직), 다수 동종 전과)
제3호(건설)	시너지건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원	외국인 하청 근로자 사망사 책임 → 원청 대표이사
제4호(건설)	만덕건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	하청 근로자 사망사 책임 → 원청 대표이사
제5호(건설)	견룡건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	하청 근로자 사망사 책임 → 원청 대표이사
제6호(서비스)	국제경보산업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서비스 업종인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이사에게 책임
제7호(건설)	제동종합건설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8천만원	하청대표자(종사자인정) 사망사책임 → 원청대표이사
제8호(제조)	두성산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	최초의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제9호(제조)	정안철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7천만원	동종 전과 이력에도 실형 미선고
제10호(건설)	흥성건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8천만원	하청근로자사망사책임→원청(시평 200위 이내) 대표이사
제11호(건설)	제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	원청근로자사망사, 동종 전과이력에도 실형미선고
제12호(건설)	성무건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천만원	하청 근로자 사망사 책임 → 원청 대표이사
제13호(제조)	삼성포장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천만원	동종 전과 이력에도 실형 미선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및 처벌 사례

제1호 판결의 피고인 및 선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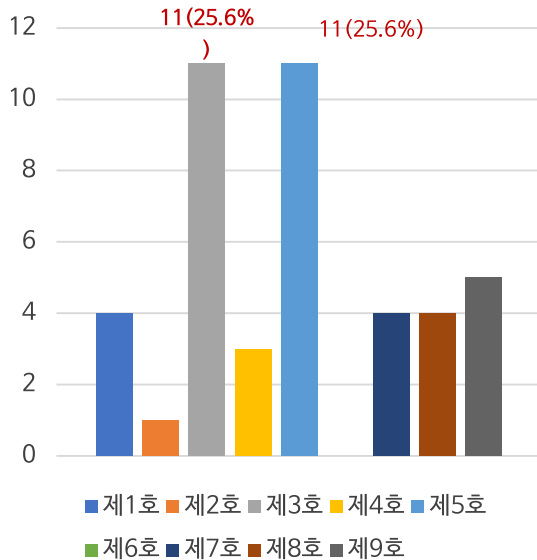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 및 처벌 사례

➤ 사업주·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시행령 제4조 관련)별 위반 사항(유죄선고 13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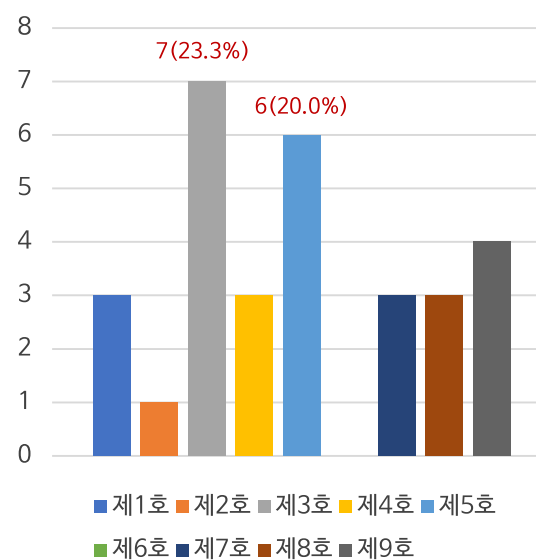


- ❖ **제3호(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이 전체의 50% 상회**
 ➤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와 연동되므로, 가장 많이 위반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 가장 중요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 건설업도 마찬가지이나, 제조·서비스업에 비해 **다른 의무(제1, 4, 7, 8, 9호) 도 골고루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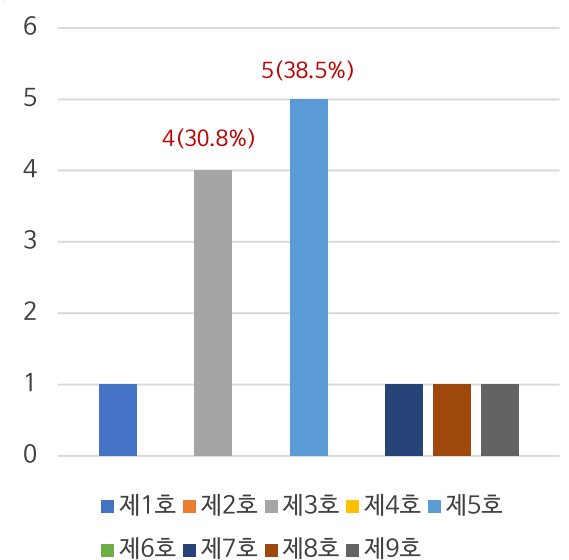
유죄선고 전체(13건)



건설업 유죄선고(8건)



기타(제조·서비스) 유죄선고(5건)



제1호: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제2호: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제3호: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제4호: 안전보건 예산편성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대한평가 제6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제7호: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제8호: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중대재해 유죄판결 시사점 : ① 다단계적 인과관계 입장을 견지

산안법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발생에 따른 중처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는 논리 구조

Key Point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이 매우 중요

다단계적 인과관계의 의미

중처법 위반(2차) → 산안법 위반(직접) → 사고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안전보건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2차적 인과관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인해 작업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직접적 인과관계)라는 논리구조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고발생

시행령

제4조제5호, 제9호 위반

- 원청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 중량물 인양 작업 관리
- 감독 부실

다단계적 인과관계 미성립에 의한 불기소 사례

전자제품 서비스 회사의 법인 및 대표이사 불기소

- 에어컨 수리업무를 위하여 실외기 점검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노동청은 전자제품 서비스 회사의 대표이사 및 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 검찰은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이행 현황을 상세히 검토한 후 회사 차원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위반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매개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는 자연히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처벌 사례

중대재해 유죄판결 시사점 : ② CSO 미인정 경향 및 동종 전력 중시

경영책임자

-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CSO)
- ✓ 현재까지 수사기관은 이른바 **CSO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경향(대표이사 위주 처벌)**

양형기준

- ✓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자백, 유족과 합의 및 처벌불원, 시정명령 등 이행,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사항 시정, 피해자측 과실의 개입 등
- ✓ 불리한 양형 요소: **동종 전과 이력(한국제강 대표이사 실형 선고)**

경영책임자 판단기준

판단기준	해당여부
의사결정 구조	회사 상호간 유기적 결합 구조 관계(수직계열화)로서 통일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는 경우
구체적 지시	계열사 회의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구체적 지시를 하는 경우
	회사의 안전보건, 생산관리, 인사, 재무 등에 관한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경우
	중대재해 등 사고 발생 시 보고를 받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경우
최종적인 의사결정	특정 임원이 여러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지시하는 등 인사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 CSO 등이 임명되어 있더라도,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

제2호 사건의 동종 전력

2010. 6. 9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합동점검)	벌금형
2020. 12. 21.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사고 예방 감독)	벌금형
2021. 5. 24.	사망사고: 1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향소심 벌금 1천만원 (2023. 2. 17. 확정)
2021. 5. 27.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사고 후 점검)	벌금형
이 사건 2022. 3. 16.	사고(중대재해) 발생	
2022. 6. 9.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 (사고 후 점검)	

의무 위반 관련 수사

- ☑ 시행령상 의무 위반 전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압수 수색하는 등으로 수사 진행
⇒ 임의제출 요구 시 사고연관성을 검토한 이후 변호인 통해 제출, 사고 직후 현장진술 신중 필요 (관계자 진술서 작성 의무 없음)
- ☑ 경영책임자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대상을 위주로 수사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의무의 위반 여부에 수사 집중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
(제5호)

종사자 의견 청취 및 필요한 조치
(제7호)

비상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제8호)

도급 시 평가 기준 마련 및 점검
(제9호)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
(법 제4조제1항 제4호)

- ☑ 특히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과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있었는지,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고 관련 작업허가제도를 실시 중인지, 업무관행, 관리감독자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
- ☑ 사고 원인과 관련된 위험성 평가가 미흡한 경우는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향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 관심사항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제3호)

- 사고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누락된 경우
- 산안법상 수시 위험성 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
- 경영책임자에 의한 반기점검 및 필요 조치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가 모두 적법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가 담당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내역을 반기 1회 이상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제7호)

- 종사자의 의견청취 절차에 개선방안의 이행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었는지
- 종사자 의견이 묵살된 경우의 근거나 사유가 있는지
- 경영책임자등에 의한 반기 점검 및 필요조치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 경영책임자에 의한 반기 점검 및 필요 조치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역량과 기초 문서를 갖출 필요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기관 관심사항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제8호)

- 매뉴얼상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조치가 포함되었는지
- 매뉴얼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었는지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제9호)

- 협력업체 평가를 위한 내부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기준 미흡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 신규 계약체결 시 뿐만 아니라 계약 갱신 또는 계약 중에도 협력업체 평가를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지
- 협력업체 평가의 근거가 된 자료는 적정한지

관련법령 의무이행점검 (법 제4조제1항 제4호)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비추어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모두 점검하였는지
-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 수행 방식 및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한 점검이 누락된 경우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을 실시한 이후 후속적 필요조치는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역량과 기초 문서를 갖출 필요



3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 [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안전정보] 바로가기 QR
- ※ 상기 부록에 첨부된 예시(양식과 규정)의 한글 파일은
대한전문건설협회(www.kosca.or.kr)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www.ricon.re.kr)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 이행 차원에서 반기별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정하는 것을 권장

실행전략

- ✓ **필수** (안전경영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정책과 의지를 간결하게 나타내고 모든 조직구성원에게 공개
- ✓ **필수** (안전목표) ①**경영방침과 연계성**, ②**구체성**, ③**측정 및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해야 함
- ✓ (안전추진계획) 방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법, 일정, 소요자원 등**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실행방법

- ✓ 매년 초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추진계획을 본사, 작업현장, 인트라넷, 게시판 등에 게시할 것
- ✓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추진계획 적합성과 실천 여부를 **반기 1회별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요구문서

-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추진계획
- ✓ 경영방침과 목표/추진계획 게시 사진 또는 사내 홈페이지 공지 사진
- ✓ 정기점검 결과와 이에 따른 필요조치 이행 확인 보고서

➤ 제1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경영방침과 목표가 분리

00건설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착
: 재해없는 일터·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00건설은 사업장의 각종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재해없는 일터,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영방침,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각자 주어진 업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상호협력 및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추구하고자 한다.

-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보건문화를 정착한다.
- 체계적인 사전 위험성평가와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하여 무재해 목표 달성을 실천한다.
- 전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 협력사와의 상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2. 안전목표

중대재해 ZERO, 일반재해 3건

(주)00건설 대

**재해현황, 위험성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설정**

경영방침과 목표가 통합

00건설 안전보건경영방침

**지속적인 위험요소 발굴,
생명손실 없는 작업환경 제공**

00건설은 생명존중 이념 아래 안전보건경영이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인식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안전보건방침을 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한다.

- 전 임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에 솔선수범한다.
-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요소를 지속적 발굴 개선한다.
- 모든 안전활동에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 종사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킨다.

상기 방침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대표이사 서명 필수

(주)00건설 대표이사 000 (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제1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목표와 추진계획

00건설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

1. 안전보건목표

중대산업재해 Zero
[추락재해 10건 이하 달성]

2. 안전추진계획

- ① 주 1회 현장 정리정돈 실시
- ②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이행률 90% 달성
- ③ 전년도 대비 환산재해율 20% 저감

년 월 일

(주)00건설 대표이사 000 (인)

점검 및 조치 확인 서식

정기점검 및 이에 따른 필요조치 확인보고서

회의구분 :
회의일자 :
회의장소 :
참석인원 :

(상반기/ 하반기)

결 재			대표이사
--------	--	--	------

1. 회의 주요 내용

회의 안건 및 내용	첨부자료
------------	------

① 안전경영방침의 적합성 및 유효성 검토(필수)

결과	
향후 개선방향	

**반기별 점검 필수
(대표이사 서명 필수)**

② 안전목표의 적합성 및 유효성 검토(필수)

결과	
향후 개선방향	

③ 안전추진계획의 적합성 및 유효성 검토(미수립 시 제외)

결과	
향후 개선방향	

➤ 제2호: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 철콘 하도급 대형 업체 적용 가능성 有

도급금액이 큰 공사 다수 수행(100억 공사 3개 이상)과 인력 투입 규모(상시근로자 500인 이상)가 큰 업체 ←

①요건 1 and ② 요건 2 해당되는 기업(수급인도 해당)은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설치

요건 1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인 이상인 기업**
- ☑ **안전관리자등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분하기 위함으므로 도급·위탁 여부와 상관 없으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미적용**

안전인력 선임대상 사업장

100억 이상 하도급 공사 3개 수행하는
철콘 업체 → 안전관리자 3인

구분	선임대상 사업장
안전관리자 (산안법 제17조)	• 60억 원 이상(관계수급인 100억 원 이상) 건설현장 → 1인 이상 • '23년 7월부터는 50억 원 이상
보건관리자 (산안법 제18조)	• 800억 원 이상 건설공사(토목공사 1,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1인 이상 - 공사금액 1,4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이 증가할 때마다 2배로 증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안법 제19조)	•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인 ①제조업, ②임업, ③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④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⑤환경정화 및 복원업 사업장
산업보건의 (산안법 제22조)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보건의를 보건관리자로 선임(위탁 가능)하거나 외부 위촉

산안법 안전관리자 선임 등

(시행령 제16조)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 경우

**수급인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미선임 사유와 관계 없이
산안법 제17~19조 및 제22조 선임요건에 해당되면 전담조직 설치 의무 발생**

➤ 제2호: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 철콘 하도급 대형 업체 적용 가능성 有

요건 2

☑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 (토목건축공사업)**

- 시평 200위 이내로 새롭게 평가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전담조직 구성
- 시평 200위 이내가 아닌 건설사업자(전문 포함)도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조직 설치
- 여러 사업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이 500명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

-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영제7조의2①)

$$\text{상시근로자 수} = \frac{\text{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총인원)}}{\text{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예시)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022.09.15일(산정기간: 08.15 ~ 09.14)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700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 상시근로자 수 = 700명 / 24일 = 29.1명
-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며, 수급인 소속 근로자는 도급인 근로자 산정 시 제외**

총괄 전담조직 설치 예시

- OO건설이 운영하고 있는 4개 현장의 합산 상시근로자수가 아래의 그림과 같을 경우, 8월과 9월에 상시 근로자수가 500인을 초과하므로 당시 시점부터 안전보건 총괄 전담부서 설치 의무 발생
- 현실적으로 월별 전담부서의 설치/해체가 불가능하므로, 전년도 상시근로자수가 500인 초과가 예상되면 전담부서 설치 권장



총괄 전담부서 설치의무 발생

➤ 제2호: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실행전략

- ✓ 전담부서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
- ✓ 전담부서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권한과 책임을 정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 ✓ 전담부서의 권한과 조직원 자격 및 인원 등은 회사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것

실행방법

- ✓ 안전보건 총괄 관리 전담부서 설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상시적으로 확인할 것
- ✓ 안전보건 총괄 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2인 이상)과 담당업무 분장표를 만들 것 (다른 업무 겸직 불가)
- ✓ 업무수행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필요한 조치 이행)

요구문서

-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제2호: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조직 설치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00건설(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직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구성원의 직무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조직】

- ①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 ② 소관부서의 관장업무와 권한의 행사, 사원의 활용 등에 있어서 항상 적절한 상황을 파악하고 조직의 기능이 유효·적절하고 능률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과 책임】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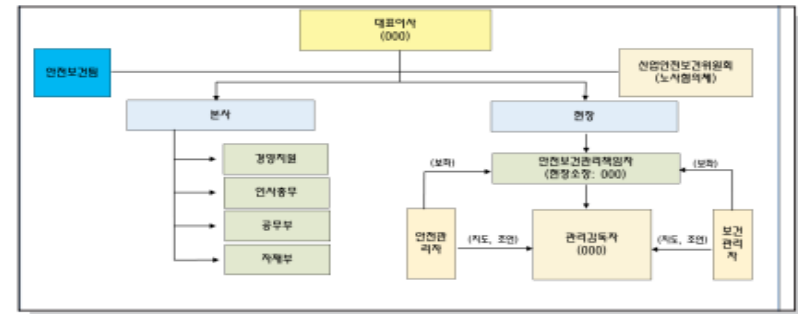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조직도 및 업무분장

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별표 2 업무분장표

직무	업무분장	비고
최고경영자	가.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제정 및 승인 나. 안전보건경영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의 승인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여부 확인 라. 시스템의 실행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제공 마. 안전보건경영매뉴얼 승인 바. 경영자 검토 및 승인 사.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 승인	
본사: 안전보건관리 임원	가. 회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원청회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립, 실행 및 유지되도록 보장 나. 회사의 안전보건경영 실적에 대한 결과내용 검토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주기적 점검과 교육 라. 위험성 평가 이행에 관련된 사항 확인 마. 비상사태에 대한 대책 수립 검토	

➤ 제3호: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 위반이 가장 많은 의무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실시, 결과 보고·조치 → 위험요인 확인·개선한 것으로 인정

Key Point

☑ 위험성 평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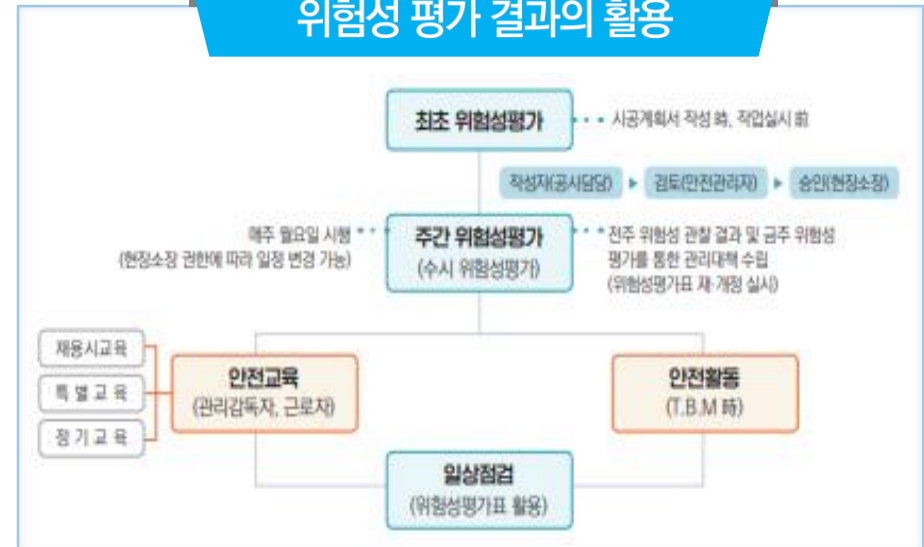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과 이행 여부의 점검 및 확인절차까지 포함
- 위험요인 발굴 및 신고창구 설치와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포함**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통제 방안과 미개선 시 작업중지와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위험성 평가 개요

구분	내용
개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실시주체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중·소기업)는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공동적으로 수행하며, 중·대기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작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실시
절차와 유형	• 위험성평가 절차: ①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②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③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 ④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가능한 위험인지 여부의 결정 → ⑤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⑥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 위험성평가 유형: 최초평가/정기평가(매년)/수시평가(시설·공정 변경시, 신재발생시 등)

위험이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주요 위험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

위험성 평가 결과의 활용



➤ 제3호: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 가장 중요한 의무

실행전략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를 담은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수립할 것
- ☑ 위험성평가 실시(최초, 정기, 수시)를 통해 위험요인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의 제어대책을 마련한 후 조치자와 확인자를 지정하여 이행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주지시킬 것

실행방법

- ☑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수집, 파악된 위험요인은 유형별로 분류
- ☑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를 참여(서명 필수)시키고, 안전교육, 일상점검에 활용할 것
- ☑ 업무수행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필요한 조치 이행)

요구문서

- ☑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
- ☑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서, 위험성평가 교육 결과서
- ☑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 개선 사항

➤ 제3호: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 가장 중요한 의무

위험성 평가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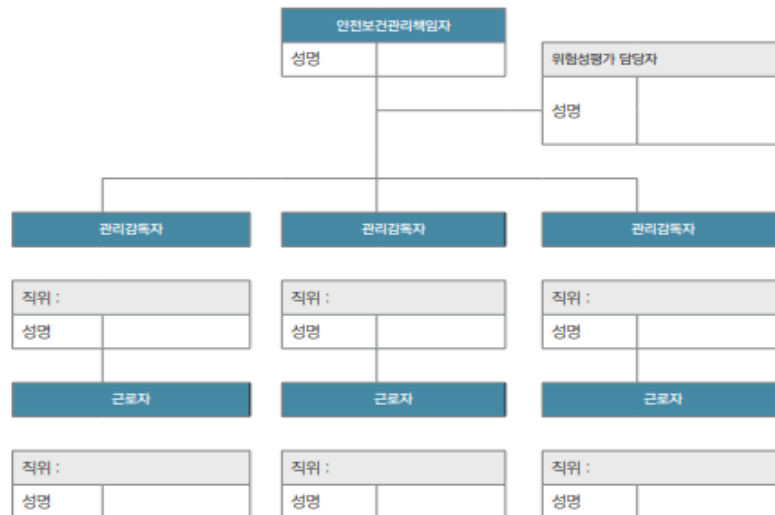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1조(목적)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실시규정은 우리 회사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표 1)과 같이 한다.

(표 1) 위험성평가 조직



위험성 평가 회의 결과

붙임 1

위험성평가 회의 결과

회의일시	20 년 월 일 : ~ :
회의장소	(회의실)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실시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관심사항 토론 등

위험성평가 회의 사진 또는 회의자료 등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명	서명	소속/직책	성명	서명

➤ 제3호: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 가장 중요한 의무

위험성 평가 교육결과

붙임 2					
<u>위험성평가 교육 결과</u>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교육장소	(교육장)				
회의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과 추진목표 -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사진 또는 교육자료 등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위험성 평가 개선사항

붙임 5		
<u>위험성평가 개선사진</u>		
개선내용	개선 전 모습	개선 후 모습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제3호: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 : 가장 중요한 의무

위험성 평가표, 회의록, 교육일지 종합

일자	공종명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등급 (상중하)	작업 지휘자	조치여부 확인 및 종사자 의견
금일 작업	형틀팀	- 101동 보 제작 및 설치작업	- 보 설치 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보 양중 시 단독작업 중 주변 지장물과 충돌 - 보 상부에서 슬링벨트 해제 중 추락 - 일반 사다리 사용에 보 안착작업 시 추락	- 보 양중 전 선 브래킷 설치(생명줄 포함) - 보 양중작업 시 2인 1조 작업 실시 - 슬링벨트(샤클) 해체는 자상에서 실시 - 보 안착 작업 시 전용사다리 사용	금00BJ	금00BJ	① 보 양중 용 브로프 부록하다 추가 지급 요망=금00BJ + 본사에 로프 즉시 구매신청=0100GJ ② 하부통계 시 원형사의 협조가 절실. 타 공종자재 차량 진입 등 통제가 안된다=강00CJ + 매일 원형사 회의 시 협조 요청 (최00소장)
	강품팀	- 102동 10층 G/F 인상작업	- 하부 신호수 미배치로 통행자 낙하물 사고 - 차량 등 통제 미흡으로 낙하사고 위험 - 케이지 발판 상부 간재를 낙하위험 - 시다 불트 사전 해체로 낙하, 추락위험	- G/F 인상 작업 전 하부 신호수 배치 확인 - 하부 통제용 펜스 사전 설치 - 강품 인상 전 발판상부 핀 등 간재를 제거 - 강품 시다불트 사전해체 수시 확인	상	강00CJ	③ 지하주차장에서 안전조회시 먼지가 많아 매우 불편하다 + 매일 원형 회의 시 협조요청 (최00소장)
위일 작업	형틀팀	- 101동 보 제작 및 설치작업	- 보 상부 작업 중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 보 양중시 단독작업 중 주변 지장물과 충돌 - 보 상부에서 슬링벨트 해제 중 추락 - 일반 사다리 사용에 보 안착작업 시 추락	- 보 양중 전 선 브래킷 설치(생명줄 포함) - 보 양중작업 시 2인 1조 작업 실시 - 슬링벨트(샤클) 해체는 자상에서 실시 - 보 안착 작업 시 전용사다리 사용	중	금00BJ	④ 콘크리트 타설 시 래미콘 차량 유도원 1명 추가지원 요망 + 콘크리트팅에서 1명 추가 지원 할 것 타설 전(경비실 인부)=일00BJ
	형틀팀	- 102동 10층 G/F 인상작업	- 하부 신호수 미배치로 통행자 낙하물 사고 - 차량 등 통제 미흡으로 낙하사고 위험 - 케이지 발판 상부 간재를 낙하위험 - 시다 불트 사전 해체로 낙하, 추락위험	- G/F 인상 작업 전 하부 신호수 배치 확인 - 하부 통제용 펜스 사전 설치 - 강품 인상 전 발판상부 핀 등 간재를 제거 - 강품 시다불트 사전해체 수시 확인	중	강00CJ	
■ 품질·안전·공정 회의 시, 최근 5년간 당사 및 타사 중대재해 사례 전파 ※ 오전 후 TBM 시 전 근로자 전파 및 주지			새해사례 내용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		현장이행 확인 및 조치
			①당사: 20.03.07 → SK건설(주)에서 CPB설치 완료 상태에서, CPB 부러져 하부 작업자가 CPB 붐에 맞아 사망		- CPB 설치 후 콘크리트 충분히 양생 후 작업 실시		-
			②당사: 20.11.28 → 호반건설(주)에서 7동 거점점 설치작업 중, 자재인양 개구부의 난간에 미설치로 근로자가 추락 사망		- 자재 인양 개구부 안전난간 설치 철저		-
			③타사: 22.07.12 → 현대건설(주)에서 G/F 인상 작업을 하다 강품 케이지 내부에 작업자가 타고 인상중 강품 사이에 끼여 사망		- G/F 인상 시 케이지 내부 절대 탑승금지		-
회의 참여자 현황	성명						
	서명						

➤ 제4호: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

건설현장 단위의 예산이 아니라 모든 건설현장 및 본사의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을 의미(기업 단위의 예산) ←

Key Point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국한해서는 아니되며, 사업장의 재정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만큼의 예산을 반드시 편성 (**안전보건 예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예산 편성 용도에 따라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기준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겸직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 - 건설기계 작업 시 주변 작업자 보호를 위한 유도자/신호자 인건비 - 화재감시 등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신호자/감시자
안전시설비	안전표지, 안전/보건시설, 방호장치 등 시설비와 보수·해체 인건비
개인보호구·안전장구 구입비	개인보호구, 보호구 관리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등
안전진단비	전문가 또는 전문가권 활용 진단 및 검사비, 작업환경 측정비 등
안전보건교육비·행사비	교육장 설치비, 안전보건관계자 교육비, 안전보건행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근로자 건강관리 비용(혈압계, 체온계, 건강진단 비용 등)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본사사용비	본사 안전 전담 부서의 인건비

안전보건 예산 편성항목(예시)

안전보건 예산 편성항목	안전보건 예산 기준
안전점검 비용	현장 순회 점검(출장비, 진단 비용 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 온라인 정기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	- 안전업무 지침서 구입 및 제작 - 안전·보건 표지, 안전 인식 강화 홍보물 제작 - 사업장 안전보호구 등 시설물 설치 지원 및 구입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	작업 환경 측정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	- 각 사업장 현장 물품 지원, 안전진단 컨설팅 - KOSHA MS 인증 수수료, 노무법인 컨설팅비
안전시설 개선 비용	제조설비, 지게차 안전 검사비(장비X10대)
작업환경개선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임직원 검진 비용, 구급약품 구매, 건강증진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표어·그림그리기 공모전, 안전 문화 강화
안전보건캠페인 등 자원비용	안전보건관련 정기 회의 및 서포터즈 운영비

➤ 제4호: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행전략

- ☑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정 여건 등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준 만큼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것
- ☑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할 것

실행방법

- ☑ 예산 편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또는 매뉴얼을 수립할 것
- ☑ 이전연도 안전관리 성과, 금년 안전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
- ☑ 집행 실적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필요한 조치 이행)

요구문서

- ☑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매뉴얼

➤ 제4호: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 예산편성·집행 매뉴얼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매뉴얼

1. 목적

본 규정은 회사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로 맞게 집행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책임과 권한

가. 경영 책임자

- (1)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안전보건 예산을 반기 1회 이상 보고받아 검토
- (2) 안전보건예산의 계획대비 실적 확인 및 개선의지 표명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에게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 부여

나. 안전보건 팀장

- (1)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경영방침 및 목표를 반영하여 안전보건 예산 수립
- (2) 안전보건예산 규모의 적정성이 심의의결 시 그에 따른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지출 계획 수립

다. 해당 부서장

- (1) 안전보건예산 규모를 보고 받고, 그 적정성을 심의의결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예산 보고
- (2) 승인이 완료된 안전보건예산을 전산에 등록하고 확정하여 전사에 공유

3. 업무흐름도

프로세스 흐름도	책임부서	주요 활동(작업 내용)	입력물	출력물
1 계획수립	안전보건팀	1. 관리팀에서 매년 10월경 전년도 안전보건예산 실적을 확인하고 차년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에 따른 예산 수립을 안전보건팀에 요청한다. 2. 안전보건팀은 전년도 안전보건관리 성과를 반영하여 요청일로부터 안전보건예산 규모를 산출한다.	안전보건예산 실적	안전보건예산 규모
2 안전보건 예산 편성	안전보건팀	안전보건팀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지출 계획에 대한 산출 근거를 검토하여 안전보건예산 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예산 및 지출 계획 수립하고 각 항목에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팀에 제출한다.	안전보건 예산 규모	안전보건예산 및 지출 계획
3 심의·의결	관리팀	1. 매년 11월경 안전보건팀에 보고받은 안전보건예산 계획을 경영기획팀에서 검토하고, 검토가 완료된 안전보건 예산 및 지출 계획을 연초에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다. 2. 관리팀은 승인을 득한 안전보건예산을 확정한다.	안전보건예산 및 지출 계획	안전보건예산 확정
4 집행 및 결산	관리팀	1. 안전보건팀은 매월 소요에 따른 상세 결산 내역을 작성하고, 전월 규정에 따라 결재가 완료되면 관리팀에 매월 결의서를 제출한다. 2. 집수가 완료된 결의서는 관리팀에서 회계 마감일에 도래하여 결산을 진행한다.	결의서 제출	결산
5 관계기관 사고보고	안전보건팀	안전보건팀은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활동 실적을 분석하여 검토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실적보고	차년도 계획수립

➤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충분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업무 평가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20억 원 이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의미

Key Point

-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실시
- ☑ 다른 평가와 병행 가능하나, 안전보건 평가결과가
낮은 경우에는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내용

구분	업무내용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중 작업환경의 정결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교육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산업보건법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조언에 관한 협조 •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작업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산안법의 안전관리조직은 Line-Staff 형
Line에 있는
현장소장(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책임 부여하고
이들을 안전관리자가 보좌

➤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

실행전략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명문화할 것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독립성을 부여할 것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원할 것

실행방법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책임과 권한을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업무분장에서 명확히 명시할 것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업무수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 ✓ 업무수행 충실성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인사고과 반영)

요구문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표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업무평가 조치 결과서

➤ 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점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경영방침에 부합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6점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관계 법령 및 현장 상황에 맞게 개정하였는지	6점
안전보건교육	법령에 정한 이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경영방침 및 목표에 따른 교육 횟수 반영)	10점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1. 작업환경측정 실시(3점) 2. 작업환경 개선 사항 이행(5점)	8점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1. 원인조사(5점) 2.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5점)	10점
산업재해 통계	통계 기록 및 유지 상황	5점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하였는지 점검	5점
위험성 평가 실시	1. 유해, 위험요인 발굴 건수(5점) 2. 위험성감소대책 수립 건수(5점) 3. 위험성감소대책 이행률(5점)	15점
안전보건규칙 준수	1. 위반 사항 발견 시마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감점 2. 형사처벌 대상 -3점 3. 과태료 대상 -2점 4. 시정조치 대상 -1점	15점
재해발생률	1. 무재해 달성 시 20점 2. 재해 1건당 -2점 3. 중대재해 1건당 -5점 4. 사망사고 1건당 -20점	20점
합계		100점

관리감독자 평가표

관리감독자 평가표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 점수
기계 등 안전점검	기계 등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후 체크리스트 작성 1) 작성내용 검토 후 평가 2) 안전보건 점검시 이상여부발견 및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가점 부여	10점
작업 전 설비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점검업무 포함)	1. 작업 전 설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2. 설비점검 여부에 관하여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 다면평가	10점
작업복 등 방호장치 점검 및 교육, 지도	작업복 등 방호장치 지적 사항 발생 시 감점	10점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1. 산업재해 보고(5점) 2. 응급조치 관련 훈련 참가 및 평가(5점)	10점
작업장 정리정돈 등에 대한 감독	안전관리자 순찰 시 정리정돈에 대한 지적 사항 발생 시 감점	5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 협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평가	5점
위험성 평가 참여	위험성 평가 참여 및 협조/위험성감소대책 참여 및 협조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평가	10점
유해위험방지업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1. 작업계획서 작성 실적(5점) 2. 작업자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작업자 평가, 5점)	10점
관리감독자 교육 참여	정기교육 참석률 및 교육 평가 점수	10점
재해발생률	1. 무재해 달성 시(20점) 2. 재해 1건당(5점) 3. 중대재해 1건당(10점) 4. 사망사고 1건당(20점)	20점
합계		100점

➤ 제6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안전·보건 관계 법령(산안법)에서 정한 인원 이상으로 배치

➤ 안전관리자(산안법 제17조), 보건관리자(산안법 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안법 제19조), 산업보건의(산안법 제22조)

Key Point

- ④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반드시 보장
 - ①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②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인 사업장(토목공사업 150억 원 미만, 수급인 100~120억원)은 겸직 가능
 - 겸직 시 최소 업무 수행시간은 연간 702시간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100~200명 사업장은 100시간, 200~300명 사업장은 300시간
- ④ 도급인(원청) 일률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②번 해당)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
 - 도급인 공사금액 450억원, 수급인 공사금액 120억 원 공사시 → ①도급인(450억 1인 전담)/수급인(150억 1인 전담) 각각 안전관리자 선임, ②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까지 추가 선임(450억 1인 전담+관계수급인 150억 1인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최소)

공사 금액	50~120억원*	120~800억원	800~1,500억원	1,500~2,200억원	2,200~3,000억원	3,000~3,900억원	3,900~4,900억원
선임 수	1명(겸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공사기간 중 전후 15	-	-	1명	2명		3명	
공사 금액	4,900~6,000억원	6,000~7,200억원	7,200~8,500억원	8,500~1조원	1조원 이상		
선임 수	7명	8명	9명	10명	11명 이상(금액별 차등 적용)		
공사기간 중 전후 15	4명		5명		선임 수의 1/2(소수점 이하 올림)		

- 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 관계수급인은 100~120억원 미만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현황

구분	정수	배치	비율	선임 기준
안전관리자	12	16	133%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보건관리자	1	1	100%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3	3	100%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	20	26	130%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1	경관책임자	정수	배치
	대표이사 ○○○		
7	경관책임자	1	1
	안전관리책임자	2	5
	보건관리자	1	1

5	공사현장	정수	배치
	○○○사업장	1	1
	안전관리책임자	1	1
	안전관리자	1	1
2	○○○사업장	정수	배치
	안전관리책임자	1	1
	안전관리자	1	1
1	○○○사업장	정수	배치
	안전관리책임자	1	1
	안전관리자	1	1(계좌)

42	공사현장	정수	배치
	공사1팀	15	26
	안전관리책임자	5	5
	안전관리자	3	3

➤ 제6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실행전략

- ✓ 사업장 특성과 법령에 맞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선임
- ✓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겸직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업무시간 보장

실행방법

- ✓ 전문인력의 경력, 자격보유, 역량을 고려한 배치기준 수립과 명단을 관리하고 사업장별 선임할 것
- ✓ 겸직할 경우에는 안전보건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최소 업무시간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것
- ✓ 인력 배치현황을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후속조치 필수)

요구문서

- ✓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현황표
- ✓ 안전관리자 등 선임 등 보고서
- ✓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 업무일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제6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안전관리자등 선임 보고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본사	사업장명	사업장등록번호	
	사업주 또는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 아래의 * 한은 특수급인이나 건설공사시공주도율을 관리자만 작성합니다.			
현장개요	현장명(사업개시번호)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율 관리자	
	전화번호	통대전화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상(근로자 수) () 원	
	굴착깊이(M)*	건축물-공작물의 최대높이(M)*	
	건축물의 면적(㎡)*	건축물의 최대높고(M)*	
PO(Precast Concrete)조립작업 유무*	다리의 최대 지면 길이(M)*		
타설깊이(M)*	면의 용도 및 자수용량(TON)*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 / 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통 연 월 일	전담-감원 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격 / 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통 연 월 일	전담-감원 구분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 / 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통 연 월 일	전담-감원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자필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안전보건 업무일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OO	OO	소 장
안전·보건 업무일지		집	제	
현장명:		업무일자:		
		업무시간:		
항목	주요 업무내용	업무 조치결과	비고	
① 안전교육 관련사항				
② 안전회의 관련사항				
③ 안전점검 관련사항				
④ 기타				

➤ 제7호: 종사자의 의견청취: 위험성 평가와 반드시 연계하여 실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

Key Point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도급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③ ‘건설공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 사항을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인정
- ④ ‘건설공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도급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 것으로 인정
- ⑤ 상기 협의체의 설치 의무가 없는 수급인은 도급인(원청)의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거나, 제안제도, TBM 등을 활용하여 종사자의 의견(유해위험)을 듣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

위원회등 설치 대상공사

구분	대상공사	개회	구성원	역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20억 원 이상 공사 (토목 150억 원)	분기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건설공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와 동일
도급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도급사업	월1회	· 도급인 · 수급인 전원	· 작업 시작시간 · 작업/작업장간 연락방법 · 재해 발생 위험시 대피방법 ·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 작업공정의 조정
건설공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120억 원 이상 공사 (토목 150억 원)	2개월	· 전체 근로자 대표 · 근로자 지명 명예산업감독관 · 관계수급인(20억 이상) 각 근로자 대표 · 전체 사업의 대표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관계수급인(20억 이상) 각 대표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안전보건규정 작성·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중대재해 조사·대처 수립 · 기계기구·설비 안전보건조치

TBM 활동



참고

TBM 논의 주제(예시)

- 작업 절차변경 내용
- 새로운 위험의 식별 및 기존 위험 검토
- 위험요인 통제방안
- 최근 이슈와 사건·사고 사례
- 작업 일정(일일 또는 주간)
- 안전 작업절차
- 새로 도입되는 장비와 설비의 사용법
- 날씨·계절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폭염·тал수)
- 교대 근무에 따라 다음 근무자에 전달해야 할 안전 사항



➤ 제7호: 종사자의 의견청취: 위험성 평가와 반드시 연계하여 실시

실행전략

- ✓ 하도급 공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현장에서 직접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 ✓ 제3호 위험성 평가절차 마련 및 시행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것

실행방법

- ✓ 현장은 건의함, 홈페이지, 제안제도, TBM 등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할 것
 -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홈페이지, 현장 공고에 게시할 것
 - 현장의 위험성 평가결과, 위험한 기계·물질, 아차사고 발생현황 등을 TBM 활동 시 공개할 것
 - 안전제안제도 운영을 통해 개선의견 및 제안에 대해 독려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
- ✓ 의견 청취와 반영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후속조치 필수)

요구문서

- ✓ 안전보건 정보(안전목표, 내부 규정 등)의 홈페이지 또는 현장 공고 게시 사진
- ✓ 현장 TBM 활동 일지
- ✓ 제안서 및 제안제도 이행결과 보고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제7호: 종사자의 의견청취: 위험성 평가와 반드시 연계하여 실시

TBM 회의록 양식

Tool Box Meeting 회의록(양식)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업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예 □ 아니오 □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①			①		
②			②		
③			③		
중점위험요인	선정	※ 잠재위험요인 ① ~ ③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 소속 : • 성명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 하의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소(중점위험 포함)			내용		
①					
②					
③			예□,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 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작업내용 등 추가 위험요인 등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행)					
■ 참석자 확인 ※ TBM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위험성 평가와 연계

참석 근로자 서명 필수

제안제도의 제안서 양식

제안서

제안자	소속:	직급:	성명:
제출일자	접수번호	행정-제도분야	기술분야
		()	()
제 목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현행방법			
문제점			
개선			
개선효과	경비절감 (수익증대)		
	사무개선등 기타		
특기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제8호: 비상대응매뉴얼 수립 및 점검

재해발생 등에 대비하여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 실시 및 조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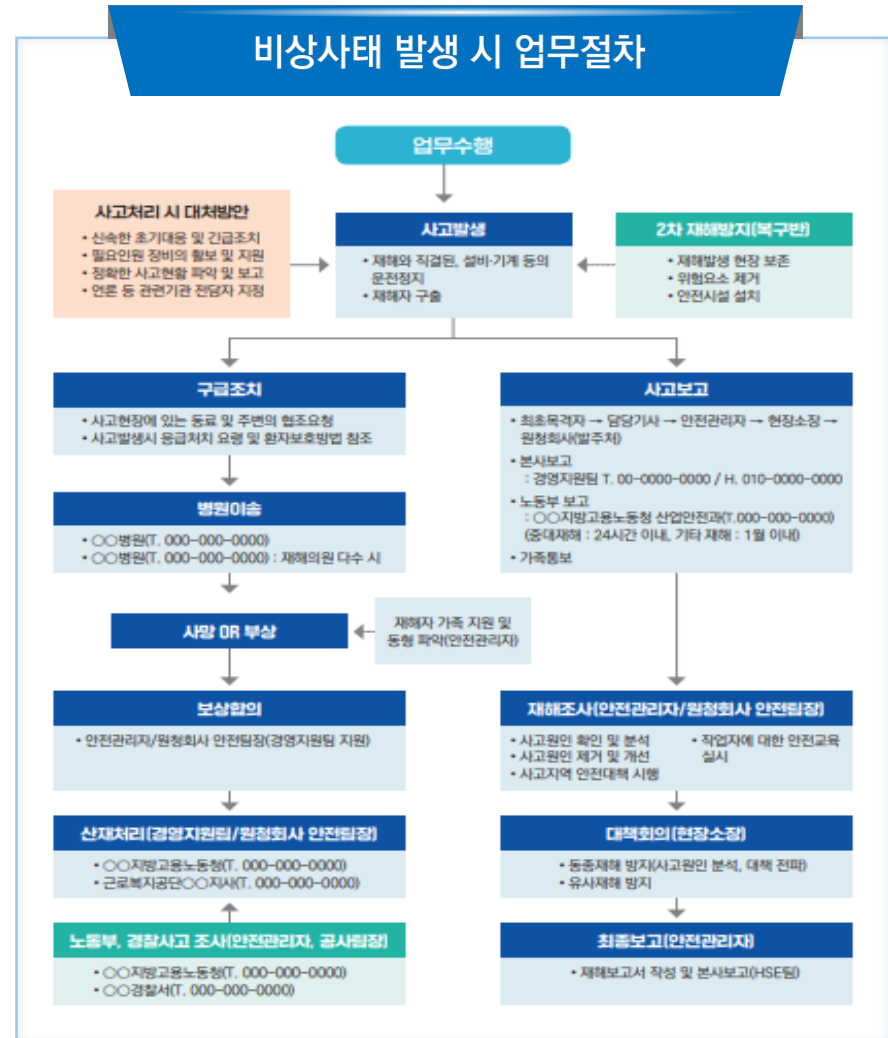
Key Point

- ✓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피해자 구조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
-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비상연락체계, 구급조치 방안, 현장통제, 정보공유 및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

비상상황 대응훈련 흐름

구분	책임	주요 업무내용
비상상황 선정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최초/정기 위험성평가 공정별 "상" 등급 위험요인에 대한 비상상황 선정
비상시 대응 절차 수립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상황별(별첨, 비상 모의훈련 시나리오 참조) - Slab conic 타설 시 붕괴, 시스템 동바리 붕괴 - 시스템 비계 붕괴, 추락/낙하를 사고 발생시 - 풍수에, 화재/폭발, 건설장비 전도
비상 모의훈련 (비상조치사전교육)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해당년도 모의훈련 실시 : 2회/년(상반기/하반기) - 모의훈련 결과 보고서 작성/보관
모니터링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매주 위험성평가 회의 시 비상조치 관련 내용 Q&A T.B.M시 작업반장 및 근로자들에게 비상조치 내용 Q&A
평가	안전관리자	Q&A를 통하여 관리감독자 평가(관리감독자 활동평가 반영)

비상사태 발생 시 업무절차



➤ 제8호: 비상대응매뉴얼 수립 및 점검

실행전략

- ☑ 사업장 단위로 재해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작업중지 등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작성할 것
- ☑ 비상조치계획을 근로자와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훈련할 것

실행방법

- ☑ 사업장별 비상대응 조치 매뉴얼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약식으로 유해위험요인별(화재, 감전 등) 근로자 대응요령을 작성하고 TBM 활동 시 근로자에게 공유할 것
- ☑ 반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요구문서

- ☑ 비상대응 및 조치 매뉴얼(훈련 계획서 및 훈련 실시결과 보고서 양식 포함)

제8호: 비상대응매뉴얼 수립 및 점검

비상대응 및 조치 매뉴얼

비상대응 및 조치 매뉴얼

1. 목적

본 규정은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직 및 운영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함으로써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가. 경영책임자

당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총괄한다.

나. 안전보건팀장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수습에 대한 책임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각 부서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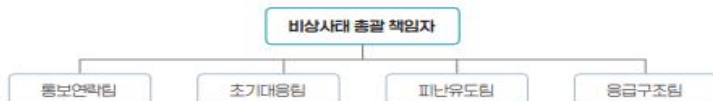
비상사태 조치에 대한 감시와 신속한 지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현장소장

- (1)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사태 연락체계에 따라 관련조직에의 보고와 1차적인 수습을 하여야 한다.
- (2) 비상사태대비에 따른 대응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3) 대응훈련결과를 분사 안전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대산업재해 대응 업무절차

가. 비상사태 조직도 및 임무



약식

비상사태 근로자 행동요령

<비상사태 발생 시 근로자 행동요령>

■ 화재 발생 시	■ 인명사고(떨어짐, 끼임 등) 발생 시
1. "불이야" 비상벨 ★큰소리로 외쳐 주변에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 발생 시 즉시 놀라서 경보 울림. 2. 소화기 이용! 초기진화 ★주변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든 경우 즉시 대피. 3. 낮은 자세로 대피 ★물통 적신 수건 등 이용 얼굴, 몸을 감싼다. 4. 안전 확보 후 대기 1) 동료대피 확인 2) 부상자 확인 3) 추가 지시사항 확인!	1. "작업중지" 기계장치 즉시 정지 ★사용기계, 장비 즉시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2. 부상자 응급조치 및 긴급전화(관리자) 1) 부상자 상태확인, 응급조치 2) 안전모의 부상자 신원 확인 3) 불확실 확인 4)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 119 3. 119구조대 도착 ★구조대의 질문에 상황 설명 부상자의 최초상태 설명 4. 사고 주변 연장보존 ★사고 현장은 관계자 외 출입금지하여 현장 보존한다.
긴급전화:	긴급전화:
■ 붕괴(무너짐) 사고 발생 시	■ 질식사고 발생 시
1. "작업중지" 기계, 장비 즉시 정지 ★사용하고 있는 기계, 장비는 즉시 정지한다. 2. 신속히 대피 1) 구조물 추가 붕괴 조심! 2)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림 3. 안전 확보 후 긴급전화 ★관리자 → 119 전화 4. 조치 완료 시 까지 안전하게 대피 1) 작업현원, 대피현원 확인하여 관리자에게 전달(매몰자 확인) 2) 원형의 안전 확보 필요 전 까지 현장진입 금지(추가 붕괴)	1. "작업중지" 즉시 대피(신선한 공기) ★신선한 공기 있는 곳으로 즉시 대피한다. 2. 긴급전화(관리자) 현장 재 진입금지 ★구조대가 몰려와서 사고 장소에 재 진입하지 않는다! 3. 119구조대 도착 1) 구조대의 질문에 상황 설명 2) 원형확인 및 전달 4. 조치 완료 시 까지 대피 ★원형의 안전 확보 필요한 까지 현장진입 금지
긴급전화:	긴급전화:
■ 감전사고 발생 시	■ 비상대피 세부 실천 요령
1. "작업중지" 전원차단 ★가설 분전반의 전원 차단 버튼 ★전기가 끊어졌는지 확인. 2. 부상자 응급조치 및 긴급전화(관리자) 1) 부상자 상태확인, 응급조치 2) 안전모의 부상자 신원 확인 3) 불확실 확인 4)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 119 3. 119구조대 도착 ★구조대의 질문에 상황 설명 ★부상자의 최초상태 설명 4. 조치 완료 시 까지 안전하게 대피 ★사고현장은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 현장 보존한다.	① 101동 회의장에서 ② 101동 주차장 입구 ③ #1 Gate로 대피 ④ 조치완료시 까지 상황종료
긴급전화:	

➤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제3자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 하도급 업체는 재하도급할 경우에만 적용

Key Point

- ☑ 제3자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방안으로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과 기술”을 가진 업체를 선정
- ☑ 도급, 위탁, 용역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집행, 안전·보건을 고려한 공사기간 및 건조기간에 관한 조항을 명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기준 종류

구분	업무내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결과가 낙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항목 포함 -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조치 능력과 기술 역량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정하여 총 금액에 아닌 항목별로 다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 수급인 종사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 -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공사기간을 정해서는 안 되며 기상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등 불발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 -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기후상황) + 작업일수(순작업) + 정리기간 -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 개설 등 착공준비 기간 -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중대일수 - 작업일수: 실적자료, 경험치, 동종 사례, 표준품셈 활용하여 산출 - 정리기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청소, 정리기간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작성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작성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 위험성평가 이행수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공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 계		100

➤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실행전략

-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할 것
- ☑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서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명시할 것

실행방법

- ☑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사업자 선정과 계약조건을 명시하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할 것
- ☑ 계약 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할 것
- ☑ 매뉴얼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요구문서

- ☑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매뉴얼

➤ 제9호: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적격업체 선정 평가 매뉴얼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 매뉴얼

1. 목적

본 지침서는 회사가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책임과 권한

가. 경영책임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보고받아 검토 및 필요한 조치 지시

나. 안전보건 팀장

- (1) 해당 부서장에게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배점,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에 따른 수급업체 선정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지속적 개선, 필요한 조치 이행
- (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협력회사 발생 시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 진행

다. 해당 부서장

- (1)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승인 및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 후 협력회사에 관련 내용 전달
- (2)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른 교육 필요 시 협력회사 교육 진행
- (3) 실시 대상 협력회사 발생 시 안전보건팀에 자료 전달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3. 평가대상 및 주기

- (1) 신규 협력회사 발생 시 해당 협력회사 대상으로 최초 평가를 즉시 진행한다.
- (2) 기존 협력회사의 경우 계약종료 시점 또는 재계약할 결정하는 시점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 (3) 본 지침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한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 기준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분시, 현장)	5	
B.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건에 대한 이행모형)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선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합계		100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안전·보건 교육

의무 이행점검

실행전략

- ✓ 법령상 의무 이행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조직과 절차를 마련하여 법적 의무 이행 여부는 물론 성과와 문제점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점검

실행방법

- ✓ 현장과 본사로 구분하여 안전보건 법규 준수표를 작성하고, 반기 1회 이상 이행여부 점검
- ✓ 미 이행시 인력 배치, 예산 추가 집행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요구문서

- ✓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현장용)
- ✓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본사용)
- ✓ 개선조치 결과 보고서

안전보건 교육

실행전략

- ✓ 법령상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작업에 따른 교육이 아닌 경우에도 마땅히 준수

실행방법

-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을 1년 단위 수립하고 예산 편성
- ✓ 미 이행시 이행 지시, 예산 집행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요구문서

- ✓ 안전보건교육계획서(1년)
- ✓ 안전보건교육일지
- ✓ 교육훈련 수강 확인서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안전·보건 교육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활동

목표/세부추진계획	추진일정				성과지표	담당	예산	달성 (%)	실적 / 부진사유
	1	2	3	4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실적	○			1회/년 이상	전부서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실적	○	○	○	수시	전부서			
교육형 개선	계획 실적	○	○	○	개선이행 100%	전부서			
예차학교수집	계획 실적	○	○	○	1건/월/인당	안전			
안전보건교육 (정기)	계획 실적	○	○	○	8시간/분기 (60명)	전부서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계획 실적			○	16시간/년 (10명)	안전			
안전보건교육 (유해물질 취급자)	계획 실적			○	16시간/년 (크레인, 유해물질취급자)	안전			
안전보건교육 (신규채용사)	계획 실적	○	○	○	8시간/년 (채용사)	전부서			
안전보건교육 (MSDS)	계획 실적	○	○	○	2시간/년 (유해물질 취급자)	전부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계획 실적	○	○	○	1회/분기	안전			
작업표준 제 개정	계획 실적	○	○	○	변경시	안전			
안전검사	계획 실적			○	2년 주기 (크레인 10대, 컨테이너 30대)	안전			
계측기 점검	계획 실적	○	○		1회/분기 (공기호흡기, 감지기)	안전			
소방시설 정기점검	계획 실적	○	○	○	1회/월	안전			
협동안전점검	계획 실적	○	○	○	1회/월	안전			
일반 건강검진	계획 실적		○		1회/년 (관리직 1회/2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특수 건강검진	계획 실적		○		1회/년 (현장직 1회/1년)	안전			
배치권 건강검진	계획 실적	○	○	○	해당시	안전			
유소권자 사후관리	계획 실적	○	○	○	5명/월	안전			
바상조치훈련	계획 실적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전부서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실적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TBM 실시	계획 실적	○	○	○	단위 작업별	전부서			
안전관제도 운영	계획 실적	○	○	○	1건/월/인당	전부서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실적	○	○	○	수입예산 이행	전부서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실적			○	1회/분기	전부서			
사정조치 이행	계획 실적	○	○	○	수시	전부서			
경영자검토	계획 실적			○	1회/년	안전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외의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 직접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 종사 외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산안법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산안법 별표 5 제1호라목제4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산안법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참고 : 중처법 대응을 위한 문서 종류

중처법 대응 문서 목록

부
1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구분	별점 서류 목록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예시 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예시 2] 정기점검결과와 이에 따른 필요조치 확인보고서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예시 3]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예시 4]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할 것	[예시 5]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를 할 것	[예시 6]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임명·배치명령
6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예시 7] 안전관리자등 선임 등 보고서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	[예시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협의체) 운영규정 [예시 9] 제안제도 시행 공지문
8 재해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예시 10] 비상대응 및 조치 매뉴얼
9 제3자 도급·용역 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	[예시 11] 적격수급업체 선정 평가 매뉴얼
10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에 따른 필요조치	[예시 12]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현장용) [예시 13] 안전보건법규 준수 평가표(본사용) [예시 14] 개선조치 요구(결과) 보고서
1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예시 15] 안전보건교육계획서(년) [예시 16] 안전보건교육일지 [예시 17] 교육·훈련 수강 확인서

반기별 이행보고 예시

부
2

반기별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이행보고 예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반기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0대 의무이행

법규	핵심요소	달성률	상세 내용
제1항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100%	· '22년 안전보건 목표 13개 중 8개 사항 이행 완료 · 5개 미이행사항 하반기 개선대책 수립
제2항	안전·보건관리 조직 설치(3명이상 전담조직)	100%	· '22년 상반기, 하반기 안전보건팀 2명 총원 · 향후 3개월 인원 및 인원 총원 근거 수립
제3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임명·배치명령	100%	· 유해·위험·위험요인 및 사업장 화학물질 취급현황,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점검 후 개선대책 수립
제4항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99%	· '22년 안전보건 예산 중 50% 집행 완료 · 하반기 안전보건예산 중역 급액 수립
시행령 제4조 제5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이행도 평가	60%	· 공사PJT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이행도 181명 중 107명 PASS
제6항	안전보건관계자 정수 이상 배치	100%	· 공사PJT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정수 이상 배치 완료
제7항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75%	· 종사자 참여활동 4개 중 3개 시행 완료 · 미실시 사항에 따른 하반기 시행계획 수립
제8항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100%	· OO사업장 비상대응훈련 2회 진행 · 하반기 전 사업장 대상 자진, 재해발생 등 훈련 진행
제9항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100%	· 신규업체 6개 중 6개라 평가완료 · 기존업체 150개 중 55개라 평가완료
법령 제4조 제2항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및 이행 조치	100%	· 3개월 상반기 공표 및 미공표 재해 산업 재해를 조사 ·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규정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반기별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이행의무 보고를 위한
자료작성·보관(必)